시보

<u>선</u>	기관의 장
겓	
람	

all ways INCHEON

제2003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규 칙	
○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17호 인천광 ○ 기천광역시교육규칙 제717호 인천광	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3
훈 령	
○ 인천광역시교육훈령 제165호 인천광	역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 8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9호 강화지	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준공인가 고시16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2호 고구지	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3호 고려지	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준공인가 고시 18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4호 대곡동	양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5호 하천(교	산천)공사 시행계획(변경) 수립 고시 2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6호 도시계	획시설(도로: 광3-9호선, 대1-1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24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7호 지적재	조사 지구의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26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0 -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12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공사완료 공고	2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22호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공고	2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30호 공시송달 공고	3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38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31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42호 계양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 주민 의견	32
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i>J</i> 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46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 고·열람	34
고·늴님 ···································	
© 정 의제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 공고	3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54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3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65호『204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수립 공청회 개최 공고 ····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12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42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14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45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15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48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7호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 ி ப	51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2-16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65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2-17호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84
조례안 입법예고	04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2-18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3
입법예고	
군 구	
└────────────────────────────────────	100
○ 8 외단증고 세2022-01소 중단 페기 중고	ıUL
기타	
	40.
○ 인천남동소방서공고 제2022-1호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101

규 칙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17호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2년 1월 24일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717호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기관의 명명	회계직의 지위	회계직명	지 정 관 직				
		회계책임관	교육행정국장				
		징 수 관	교육행정국장				
		재 무 관	교육행정국장				
	총괄직	채권관리관	교육행정국장				
		부채관리관	교육행정국장				
		통합지출관	교육재정과장				
본 청		지 출 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분임직	분임징수관	교육재정과장				
	- 판단역	분임재무관	교육재정과장, 각 과장·담당관(일상경비에 한함)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사무관				
	주임직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담당관의 경리업무담당사무관(교육재정과는 제외), 경리업무담당사무관이 없는 경우 경리업무담당장학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교육재정과의 세입ㆍ세출외현금업무담당자				
		징 수 관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주임직	재 무 관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채권관리관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부채관리관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지 출 원	복지재정과(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 지출업무담당주사(팀장)				
교육			복지재정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				
지원청	분임직	분임재무관	각 과장				
		수입금출납원	복지재정과(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 세입업무담당주사(팀장)				
	주임직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의 경리업무담당주사 또는 장학사(팀장, 지출원을 둔 과는 제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복지재정과(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 세입·세출외현금업무 담당자				
		분임징수관	관서의 장. 단, 총무부장의 직급이 서기관 이상인 관서는 총무부장				
	분임직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단, 총무부장의 직급이 서기관 이상인 관서는 총무부장 (분원은 분원의 장)				
관서		수입금출납원	학교는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지정하는 자, 학교 외의 관서는 경리담당				
(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		일상경비 출납원	관서의 경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경리업무담당자 (분원은 교육행정직렬의 최상급자)				
	주임직	학교회계 출납원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지정하는 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학교는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지정하는 자, 학교 외의 관서는 경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경리업무담당자				

신・구조문대비표

			현	힝	}						개		정	안	•		
		분임 재무관	관서의 장. 단관서는 총무투 관서의 장. 단관서는 총무투	t, 총무부장의 부장	직급이	서기관	이상인		분인직	분임 징수관 분임 재무관						서기관 서기관	
관서 11 (제가 와 제가 관함) 포함)	주 구 이미지	일상 경비 출납원	관서의 경리?	<mark>업무담당사무</mark> 편	· 또는 >	리담당 경리업무		관서 11 (제1 와 의 제2 관함)	주인지	그 다합 이 사이 바이 다 하는 하는 하	관서의 (분원은	경리? · 교육				학교는 의담당 경리업무' 자)	
五·日)		글 ㅂ 년	행정실장, 행하는 자 학교는 행정실 지정하는 자, 학교 외의 경리업무담당		는 학교는 이 없는 업무답되		, , ,	王智)	직	교계원 · 외출 학회술 입출금원 세세원납	행정실 지하는 지 학교는 지정하는 지 학교 의 경기 의 경기 의 경기 의 기계 의 기계 의 기계 의 기계 의 기계	해저스	정실장 실장, 행 관서는 남자	정실장여		는 교장이 학교는 당사무관	교장이

개정 사항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교직원수련원 하부조직으로 분원이 신설됨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원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 분원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신설(별표 1)

훈 령

인천광역시교육훈령 제165호

발 령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2년 1월 24일

인천광역시 교육훈령 제165호

인천광역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행정규제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호선"을 "선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잔임기간"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출석한 교육감소속 공무원이 아닌"을 "참석한 위원 중 제5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존속여부"를 "존속 여부"로 한다.

제16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한다.

부	칙
亍	<u> </u>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u>「행정규</u>	제1조(목적) <u>「행정규</u>
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	제기본법
<u>다)</u> 의 취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청소관 각종 교육규제를 정	
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규제"라 함은 <u>법 제2조</u>	1 「행정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	제기본법」(이하"법"이라 한
육관련 행정규제 또는 교육행	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관이 하급의 교육행정기	
관이나 각급학교에 대하여 교	
육과 관련된 특정한 사항을	
이행・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설치) 교육규제의 자체정비	제3조(설치)
및 신설억제 등에 관한 인천광	
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인천광역시교
육규제완화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세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
육행정기관이 하급교육행정기
관 등에 대하여 행하는 일일 명
령이나 교육행정기관 내부업무
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세5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u>호선</u> 하고 민주시민교육
국장, 미래교육국장, 교육행정
국장, 교육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u>어느</u>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6. (생 략)
데7조(임기) ① (생 략)
I I

교육감 <u>소속하에</u> 인천광역시교	<u>소속으로</u>
육규제완화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제4조(기능) ①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기타</u>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4. <u>그 밖에</u>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	② 제1항에도
육행정기관이 하급교육행정기	
관 등에 대하여 행하는 일일 명	
령이나 교육행정기관 내부업무	
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구성) ① (생 략)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②
중에서 <u>호선</u> 하고 민주시민교육	<u>선출</u>
국장, 미래교육국장, 교육행정	
국장, 교육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u>어느</u>	③ 사람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7조(임기) ① (생 략)	제7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	②
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 2. (생략)
- 3. <u>기타</u>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 ②・③ (생 략)
- 제9조(의견의 청취) ①·② (생략)
 - ③ 교육행정기관이 <u>제2항의 규</u> 정에 의하여 출석 또는 자료제 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u>출석한</u> 교육감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교육규제의 사후관리) ① (생 략)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정비된 교육규제의 존치· 완화·폐지·신등의 내용을 대 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 야 한다.

<u>임기의 남은 기간</u>
제8조(회의) ①
1.・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u>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견의 청취)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u>제2항에 따라</u>
제12조(수당 등) <u>참석한</u>
위원 중 제5조제3항에 따라 임
명 또는 위촉된
범위
제14조(교육규제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라</u>

③ 훈령・예규・지침 등 행정명
령을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
정기관의 장은 수시로 그 <u>존속</u>
<u>여부</u> 를 검토하여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그에 상응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등) <u>기타</u> 위 저 원회의 운영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3)				
			_	<u>존속</u>
여부				
				•
세16조(위원회	운영	등)	그	밖에
	<u> -</u> 관현	<u>}</u>		

개정 사항

1. 개정이유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이 변경(단서 조항 신설)됨에 따라, 회의 출석수당 지급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출석수당 지급 대상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제5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해관계인'으로 함(제12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국어 어문규정 등에 따른 자구 변경 등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9호

강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준공인가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77호(2017. 07. 19.)호로 시행계획승인 고시한 강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 1. 24.

인 천 광 역 시 장

- 1. 사 업 명 : 강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 2. 사업목적 : 가뭄 피해지역에 필요한 농업용수 확보를 통한 영농기반 개선
-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외 3개면,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일원
- 4. 수혜면적 : 680ha
- 5. 사업(준공) 내용
 - 저류지 1개소 : 총저류량 667천㎡, H=6.5m, L=1,780m
 - 양수장 3개소 : 강화1 185kW×400mm×2대 / 강화2 350kW×400mm×2대

북성 - 65kW×250mm×2대, 22kW×250mm×1대

• 송수관로 4조 24.2km : 강화1호 - L=10.8km / 강화2호 - L= 8.6km

북 성 - L= 2.6km / 양 사 - L= 2.2km

- 6. 사 업 비 : 46,408,000천원
- 7. 사업기간 : 2017. 9. ~ 2021. 12.
- 8.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215번길 20

나.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

9. 기 타 : 관련서류 열람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전화 032-930-2525)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2호

고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2호(2019. 01. 31.)호로 시행계획승인 고시한 고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 1. 24.

인 천 광 역 시 장

- 1. 사 업 명: 고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2. 사업목적 : 취약시설 보강을 통한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
-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일원
- 4. 수혜면적 : 769ha
- 5. 사업(준공) 내용
 - 제당보강 : 제체 단면보강, 하류연약지반보강, 사석보강
 - 여수토방수로 : 여수토 방수로 재설치
 - 사석공 : 피복석 쌓기
 - 양수장 안전사다리 및 안전난간 설치
- 6. 사 업 비 : 4,179,000천원
- 7. 사업기간 : 2019. 3. ~ 2021. 12.
- 8.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215번길 20
 - 나.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
- 9. 기 타 : 관련서류 열람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전화 032-930-2530)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3호

고려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준공인가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323호(2018. 12. 17.)호로 시행계획승인 고시한 고려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어촌 정비법 제114조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 1. 24.

인 천 광 역 시 장

- 1. 사 업 명 : 고려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 2. 사업목적 : 농업용수 수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수질 유지
-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려저수지 일원
- 4. 수혜면적: 884.7ha
- 5. 사업(준공) 내용
 - 토목공사 : 인공습지 2개소, 침강지 1개소, 부댐 1개소
 - 기계공사 : 양수시설 2개소
 - 전기공사 : 양수장 옥내배전반 및 배관공사, 자동화공사 1식
 - 부대공사 : 가설사무실, 중기운반, 시험비 1식
- 6. 사 업 비: 7,822,000천원
- 7. 사업기간 : 2019. 4. ~ 2021. 12.
- 8.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215번길 20
 - 나.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
- 9. 기 타 : 관련서류 열람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전화 032-930-2530)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4호

대곡동양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69호(2019. 9. 2.)호로 시행계획승인 고시한 대곡 동양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에 따라 준공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 01. 24.

인 천 광 역 시 장

- 1. 사 업 명: 대곡동양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2. 사업목적 : 취약시설 보강을 통한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
-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계양구 동양동 일원
- 4. 수혜면적: 777ha
- 5. 사업(준공) 내용
 - 용배수로 14조 L=4,658m
- 6. 사 업 비: 1,580,000천원
- 7. 사업기간 : 2019. 9. ~ 2021. 12.
- 8.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11-1

나.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장

9. 기 타 : 관련서류 열람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전화 031-980-8153)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5호

하천(교산천)공사 시행계획(변경) 수립 고시

지방하천(교산천)에 대하여「하천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우리시 수질환경과(※ 032-440-3622) 및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 032-440-52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건설과(※ 032-930-3697)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22년 1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장

- 1. 하천공사의 명칭: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변경없음]
-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 목 적

지방하천 교산천은 현 제방이 계획홍수위에 비해 낮고 계획하폭이 부족하여 홍수시 농토 및 인가 등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하천으로써 하천기본계획 및 설계기준에 의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 항후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 및 보존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개 요

구 분	축제공	호안공	구조물공	교량공	하도정비공	부대공
3.25km	6,560m	6,433m	통문(5개),통관(30개)	4개소	3개소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변경없음]

-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북성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607(도화동 421-19)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변경]

[당초]

- 착수예정일: 2017년 12월 - 준공예정일: 2020년 12월

[변경]

- 착수일: 2019년 12월 19일

- 준공예정일: 2023년 11월 23일

-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변경없음, 게재생략]
- 7.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 게재생략]
-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변경)

[당초] (단위: 백만 워)

	구 분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一			유사다미	2015	2016	2017	2018이후	비고			
합	합 계		15,200	800	200	200	14,000				
	설 :	계 비	550	550	_	_	_				
	보	상 비	1,998	250	198	198	1,352				
사업비	공 .	사 비	12,602	_	_	_	12,602				
	감	리 비	_	_	_	_	_				
	부	대 비	50		2	2	46				
재 원 조 달 계 획	국	비	7,600	400	100	100	7,000				
계 획	川	비	7,600	400	100	100	7,000				

[변경] (단위: 백만 원)

	구 분			연도별 투자계획					
	正	총사업비	2020이전	2021	2022	2023	비고		
히	· 계	26,068	8,080	3,852	3,750	10,386			
	설 계 비	404	404	_	1	ı			
	보 상 비	2,725	2,725	_	1	_			
사업비	공 사 비	20,315	4,459	3,500	3,500	8,856			
	감 리 비	2,574	450	352	250	1,522			
	부 대 비	50	42	_	1	8			
재 원 조 달 계 획	국 비	4,040	4,040	_	_	_			
계획	시 비	22,028	4,040	3,852	3,750	10,386			

9. 공사예정공정표 (변경)

[당초]

	구 분	보할				추		진	계	=	획				비고
공 종		(%)	4	8	12	16	20	24	28	32	36	40	44	48	101 17
1.축 기	 제 공	25.36	2.31	2.31	2.31	2.31	2.31	2.31	2.30	2.30	2.30	2.30	2.30		
', '	· · · · · ·														
2.하도?	정비공	39.74			4.98	4.97	4.97	4.97	4.97	4.96	4.96	4.96			
3.구 조	무고	3.1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1 _	. 2 0	0.15													
4. 부체5		5.03				0.72	0.72	0.72	0.72	0.72	0.72	0.71			
4. \\ \A\\ \]	エエラ	5.03													
E 6	가 고	17.00			2.17	2.17	2.17	2.17	2.17	2.16	2.16	2.16			
5.교 高	ð 5	17.33													
е н г	-11 -	0.00	0.78	0.78	0.78	0.78	0.78	0.78	0.78	0.78	0.79	0.79	0.79	0.79	
6.부 [대 공	9.38													
계		100.0	3.09	3.09	10.69	11.40	11.40	11.40	11.39	11.37	11.38	10.92	3.09	0.78	
누	계	100.0	3.09	6.18	16.87	28.27	39.67	51.07	62.46	73.83	85.21	96.13	99.22	100.00	

[변경]

	구	분	보할				추		진	계		획				비고
공 종			(%)	4	8	12	16	20	24	28	32	36	40	44	48	חו דג
1.축	제	0년	48.09			13.03	8.15					3.85	15.88	6.44	0.74	
2.하9	드정법	<u></u> 공	3.11										3.11			
3.구	조 물	6	12.03					1.72	0.69			4.85	4.77			
4.부쳤	테도로	공	0.52												0.52	
5.교	량	仔0	25.68						4.77	3.36	1.42	12.20	3.93			
6.부	대	징	10.57	0.20	0.12	1.69	2.12	0.67	0.67	1.07	0.35	0.50	1.19	0.08	1.91	
	계		100.0	0.2	0.12	14.72	10.27	2.39	6.13	4.43	1.77	21.4	28.88	6.52	0.78	
누		계	100.0	0.2	0.32	15.04	25.31	27.7	33.83	38.26	40.03	61.43	90.31	96.83	100	

-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게재생략]
- 11. 「하천법」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예상 면적 [해당없음]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9호선, 대1-1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9호선, 대1-11호선, 사업명: 석남 혁신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도로 확장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 032-440-3722), 서구청 도시계획과 (☎ 032-560-47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24.

인 천 광 역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서구 석남동 224-20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명: 광로3류9호선, 대로1류11호선]사업
 -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명: 광로3류9호선, 대로1류11호선, 석남 혁신물 류센터 건립에 따른 도로 확장공사]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없음)
 - O 사업면적: 1,409㎡
 - O 사업규모
 - 봉수대로(광로3류9호선) L=160m, B=39.5m→45m
 - 길주로(대로1류11호선) L=210m, B=35m→38m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O 성명: 쿠거인더주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 진평자우
 - O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30, 14층(역삼동)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O 당초: 2019.12.16. ~ 2022.1.31.
 - 변경: 2019.12.16. ~ 2023.7.31.
 - O 변경사유: 시공사 선정, 존치 폐기물 처리 등의 사유로 공사 착공 이 지연되어 사업기간 연장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8. 지형도면
 - O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7호

지적재조사 지구의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 지구의 변경(경미한 변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장

- 1. 사 업 명
 - 동구 금곡1 지적재조사지구
- 2.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 3. 변경내역
 - 동구 변경 현황

TIDE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지구명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비고
금곡1	51	3,449.7	50	2,875.7	필지수 증감: 1필지 감 면적증감: 감574㎡

4. 토지조서

-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전화032-440-4552~4, 팩스032-440-8682)
- 동구 민원지적과(전화032-770-6347, 팩스032-770-6359)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12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공사완료 공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대연평도 해수담수화 시설) 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2. 1. 24.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325-160 일원 (중부리)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산16-1 일원 (당섬)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공유수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 명칭: 대연평도 해수담수화 시설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3,574㎡ (중부리: 2,392㎡, 당섬: 335㎡, 공유수면: 847㎡)
- 규모: 3,210㎡/일 (중부리: 490㎡/일, 당섬: 20㎡/일, 공유수면: 2,700㎡/일)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5. 사업기간

○ 2020. 12. 30. ~ 공사완료 공고일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22호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공고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제2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제7조 및 제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수수료와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시 소요되는 현장 출장 경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장

- 1. 2022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붙임
- 2. 현장 출장 경비

가. 시내(구)지역: 108,000원

나. 시외(군)지역: 216,000원

- 3. 도서지역 시험의뢰 시 현장출장에 따른 선박이용료, 숙박료 및 기타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징수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032-440-5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시험방		소요기			시험방	수수료(원	
구 분	시 험 종 목	법	수수료(원)	간	구 분	시 험 종 목	법)	소요기간
	함 수 비	KSF2306	21,000	6일	콘크리트	염 화 물	KSF2515	33,300	5일
	밀 도	KSF2308	61,200	7일	용 골 재	유기 불순물	KSF2510	25,700	5일
)) F (*	액 성 한 계	KSF2303	68,400	5일	277	형 상 치 수	KSF4004	11,700	4일
성토용흙	소 성 한 계	KSF2303	46,300	5일	콘크리트 벽 돌	압 축 강 도	KSF4004	31,700	4일
	씻 기 시 험	KSF2309	44,500	4일	7 2	흡 수 율	KSF4004	61,100	5일
	다 짐	KSF2312	221,600	4일	277F	형 상 치 수	KSF4002	12,400	4일
	실 내 C B R	KSF2320	384,300	10일	콘크리트 블 록	압 축 강 도	KSF4002	31,700	4일
	함 수 비	KSF2306	20,800	6일	е т	흡 수 율	KSF4002	61,100	5일
노 체	다 짐	KSF2312	202,700	4일	굳지아니한	압 축 강 도	KSF2405	15,500	실소요일
	현장 들밀도	KSF2311	87,300	4일	콘크리트	휨 강 도	KSF2408	89,600	실소요일
	평 판 재 하	KSF2310	201,500	4일	(레미콘포함)	코 아 두 께	KSF2412	240,100	3일
	함 수 비	KSF2306	20,700	6일	아스팔트	안 정 도	KSF2337	86,600	4일
1, ,,	다 짐	KSF2312	195,700	4일	콘크리트 (기츠요	흐 름 값	KSF2337	86,600	4일
노 상	현장 들밀도	KSF2311	86,800	4일	(기층용, 중간층용)	다짐횟수	KSF2337	43,100	4일
	평 판 재 하	KSF2310	201,500	4일	아스팔트	안 정 도	KSF2337	86,600	4일
	체 가 름	KSF2502	221,500	5일	콘크리트	흐 름 값	KSF2337	86,600	4일
	밀도및흡수율	KSF 2503 KSF 2504	56,500	7일	(표층용)	다 짐 횟 수	KSF2337	43,500	4일
	함 수 비	KSF2306	20,700	6일	플 렌 트	추출 체가름	KSF2502	150,800	5일
동상방지층	다 짐	KSF2312	200,700	4일	혼 합 물	아스팔트함량	KSF2354	142,700	5일
및	현장 들밀도	KSF2311	86,800	4일	혼합물의	코아채취두께	KSF2367	149,000	4일
보조기층	평 판 재 하	KSF2310	201,500	4일	포 설	밀 도	KSF2446	71,500	4일
	실 내 C B R	KSF2320	356,710	10일	277-	형 상 치 수	KSF4006	11,300	4일
	마 모 율	KSF2508	71,000	6일	콘크리트 경계블록	휨 강 도	KSF4006	41,600	4일
	0.08mm통과율	KSF2511	37,000	4일	70/미旦 ㅋ	흡 수 율	KSF4006	44,700	5일
	체 가 름	KSF2502	223,300	5일	보차도용	형상치수	KSF4419	11,300	4일
	밀도및흡수율	KSF 2503 KSF 2504	56,700	7일	콘크리트 인터록킹	휨 강 도	KSF4419	41,700	4일
	함 수 비	KSF2306	20,700	6일	블 록	흡 수 율	KSF4419	46,800	5일
0) = 3 3	다 짐	KSF2312	200,700	4일	· 중 A) O	형 상 치 수	KCPI001	32,600	4일
입도조정 기 층	현장 들밀도	KSF2311	86,800	4일	호 안 용 블 록	압 축 강 도	KCPI001	28,500	4일
// 6	평 판 재 하	KSF2310	201,500	4일	글 녹	흡 수 율	KCPI001	68,300	5일
	실 내 C B R	KSF2320	356,800	10일	석 재	압 축 강 도	KSF2519	35,300	5일
	안 정 성	KSF2507	135,300	15일	7 1	비중및흡수율	KSF2518	56,500	7일
	마 모 율	KSF2508	69,500	6일	пЕМЕ	형상치수	KSL4201	12,900	4일
	0.08mm통과율	KSF2511	31,400	4일	보통벽돌 (치장·점토)	압 축 강 도	KSL4201	41,600	4일
콘크리트용 골 재	용 적 질 량	KSF2505	55,700	6일	(10.月五)	흡 수 율	KSL4201	52,600	5일
골 재	표면수량	KSF2509	42,900	4일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30호

공시송달공고

(국제물류주선업 2차 위반-사업정지 30일 행정처분 공시송달)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의 위반업체에 대하여 2차 위반 - 시업정지 30일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고 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년 1 월 24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처분대상업체

연 번	등 록 번호	업체명	대표	법인주소	예정된 행정처분 원인
1	801	㈜지오스	박**	인천광역시중구공항동로296번길 98-11, 비동 102호(운서동)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1.6.15.)
2	625	㈜와이에이치로지스	김**	인천광역시 동구 보세로 51, 2층(만석 동)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1.6.30.)
3	452	천성해운항공㈜	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씨동 2314호 (송도동,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등록기준미신고(3.14) (신고기한:2021.5.12.)

- 2. 예정된 행정처분 : 2차 위반 사업정지 30일('22. 2. 7. ~ 3. 8.)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인하기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기입)미달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등록기준 미신고
-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5. 의견제출 및 기타 문의
 -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1층(구월동) 택시물류과
 - 담 당 자 : 택시물류과 송영국(032-440-387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38호

제200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변경등록사항 : 기술인력 변경

사업장명	대표자	등록일자	변경사항		
(분야 및 등록번호)	네표시 	등록 될 사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주)엘에스티에스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140호)	박상광	2021. 1. 20.	기술인력 변경	장홍선 (수질환경기사) [해임]	김충환 (공학박사) [선임]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42호

계양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 주민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인천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계획(안) 및 환경영향평가(초안) 등에 대하여「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가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등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5-2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243,294㎡

라. 사업기간 : 2017년 ~ 2024년

마.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한국산업단지공단

바. 주요 내용

1) 총 면 적: 243,294㎡ 2) 산업시설용지: 140,701㎡

3) 지원시설용지: 6,364㎡ 4) 공공시설용지: 96,229㎡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2년 1월 20일 ~ 2022년 2월 22일

나.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 계양구청 공영개발과, 부평구청 도시

재생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부천시청 기업지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 계양사업단

다. 관계서류 : 열람 장소에 비치

3. 합동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개최일시 : 2022년 2월 7일 (월) 15시

나. 개최장소 : 계양농협 대회의실(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89)

- 온라인 생중계 : 유튜브 '계양산업단지 합동설명회'검색

- 다. 주요내용 : 산업단지계획(안) 설명 및 의견청취(환경·재해·교통 영향평가 포함) 라. 참석자 제한
 - 코로나 19에 따른 정부 지침에 따라 참석인원을 제한하며(49인), 참석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미접종자 등은 온라인 생중계 설명회 시청을 권고 드립니다.

4. 주민 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22일까지

- 나.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양식에 따라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계양구청(공영개발과), 부평구청(도시재생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부천시청(기업지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계양사업단)에 서면 또는 FAX로 제출
 - 1)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032-440-4672 FAX 032-440-8665)
 - 2) 인천 계양구청 공영개발과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032-450-5643 FAX 032-541-9739)
 - 3) 인천 부평구청 도시재생과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032-509-6915 FAX 032-509-6919)
 - 4) 서울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02-2600-6692 FAX 02-2620-0468)
 - 5) 부천시청 기업지원과 :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655 /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5층 (☎032-625-2746 FAX 032-625-2739)
 - 6) 한국산업단지공단 계양사업단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공원로 30, 6층 (☎070-8895-7487 FAX 070-4850-9031)
- 다. 제출내용 :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초안), 교통영향평가(안), 재해영향평가(안) 등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의견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032-450-5643),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4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교통영향평가서(안), 재해 영향평가(안)의 요약서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계양구청 홈페이지 (http://www.gyeyang.go.kr), 부평구청 홈페이지 (http://www.icbp.go.kr), 서울시 강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gangseo.seoul.kr), 부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한국산업단자공단 홈페이지 ((https://www.kicox.or.kr)에 게시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46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24.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32-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녹지)

○ 명칭: 선학경관녹지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3,592㎡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예정일: 2023.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작성생략(열람장소 비치)】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작성생략(열람장소 비치)】
- 8.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9.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52, 남동구 정각로 29)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도시계획과, 032-749-8654, 남동구 원인재로 115)
- 10.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48호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 공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인천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 칭	위 치	면 적	지구지정 제안자 명칭(성명) 및 주소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895-2번지 일원	86,133m²	(명칭) 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승우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2. 관련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열람기간	열람장소
2022년 1월 24일 ~ 2022년 2월 7일(14일간)	(부평구) 도시정비과 (☎032-509-6902)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인천도시공사) 복합지구내 현장사무소 (☎032-330-2526)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478-3 2층 ※ 상기 장소에서 열람 및 의견서 제출 가능

※ 열람도서: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2. 1. 24. ~ 2022. 2. 7. (14일간)
 - ※ 의견 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열람은 가능함.
- 제출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별도의 양식에 따라 직접.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 의견서는 제출기간 내 제출 및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제출장소
 - (직접 제출) 열람장소에 직접 제출
 - (우편 및 팩스) 인천도시공사 재생사업처
 - ※ 주소: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만수동) 인천도시공사 재생사업처 FAX: 032-260-5319
- 본 사업계획(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인허가 및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공공주택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의견 청취 공고일로부터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 구청장은 허가 전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1) 건축물의 건축 등
 -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2) 인공 시설물의 설치
 -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 3) 토지의 형질변경
 - :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 4) 토석의 채취
 -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토지의 분할·합병
-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3)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 4)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 5) 주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6)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 (경작지에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재생정책과(☎032-440-4469), 인천도시공사 재생사업처 (☎032-260-53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제출서

사업명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895-2번지 일원				
	인천도시공사				
	2022. 1. 24. ~ 2022. 2. 7. (14일간)				
관련지번 (소유지번)					
	□ 소유자 □ 관계인 (해당사항에 ✔) 성명	생년월일			
의견제출자					
	주소 (주민등록상 현주소)	연락처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에 대한 의견 ※ 소유자 및 관계인, 이해관계가 있는자 작성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5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1) 업 체 명: (주)삼인비엔에프

2) 대 표 자: 장형철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42, 나동 3층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153호

6) 등 록 일 자 : 2022. 1. 2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65호

『204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수립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40년을 목표로 하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2년 1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청회 개최 목적

2040년을 목표로하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2. 2. 10.(목) 14:00 ~ 16:00

나. 장 소

o 온 라 인: 인천광역시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mNvlr9NMmos)

- ㅇ 오프라인: 송도컨벤시아 116, 117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 ※ <u>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온라인 비대면 공청회로 일반인의 참석을 제한하며,</u>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3.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개요

가.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목표년도 2040년

o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전지역(1,104.45km)

나. 주요내용

- o 계획의 목표 와 지표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관련 사항
- 공원녹지 계획의 방향·목표, 공원녹지의 미래 여건 변화,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 공원녹지의 보전·관리·이용, 도시녹화, 그 밖에 공원 녹지의 확충·관리·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

4. 의견제출

가.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공청회는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하실 수 있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의견서 제출

- o 제출기한: 2022. 2. 10.(목) ~ 2022. 2. 17.(목) 18시까지
- 이 제출방법: 전자우편(swnoh@korea.kr) 및 팩스(☎032-440-8718)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민원동 3층)
- ※ 본인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이메일)과 의견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지정서식 없음)

5. 기타사항

- 가. 본 공청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근거한 행사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일반인의 참석을 제한하며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합니다.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032-458-70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12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의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도로법」 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건 명: 도로법위반 과태료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2. 1. 19. ~ 2022. 2. 3.(15일간)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붙임의 내용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6. 납부안내를 참조하시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6. 납부안내

가. 납부기한 : 2022. 4. 4.까지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

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 니다

다. 납부기한이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 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의제기제출

이의제기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이의제기서 제출 기한 : 2022년 4월 4일

8. 기타 자세한 내용

ㅇ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공시송달대상

순번	회계 연도	과태료 부과번호	대상자	납부자번호	주민등록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 차량	처분 과태료	반송사유	비고
1	2021	000421	고*문	520707-***	경기도부천시 송내대로42번길 50-8 (송내동)	2021.8.19. 10:43	중구 항동 인중로 항동과적검문소	축하중1.07톤 초과(축하중11. 07톤)	인천06아5 710	500,000	반송(폐문 부재)	
2	2021	000464	이*희	900331-***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대평2길4 2-13,404호	2021.9.27. 15:10	서구 연희동 경명대로 이동1반	폭1.62미터 초과(총폭4.12 미터)	98조7266	1,000,000	반송(폐문 부재)	
3	2021	000469	김*환	571113-*** ****	경기도화성시비봉면양노로 121 (진보상가빌라) 102호	2021.10.0 1. 14:52	서구 연희동 경명대로 이동1반	폭0.48미터 초과(총폭2.98 미터)	인천98아8 810	500,000	반송(폐문 부재)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14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의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도로법」제 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건 명: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2.1.20. ~ 2022.2.4.(15일간)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간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에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에 한함) 되시면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금액의 50%를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의견제출서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6. 납부안내

가. 자진납부기한 : 2022년 2월 25일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가능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 : 2022년 2월 25일

8. 기타 자세한 내용

ㅇ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운행제한위반과태료사전통지공시송달대상											
순번	회계연도	과태료 대장번호	대상자	납부자번호	주민등록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 차량	처분 과태료	반송사유	비고
1	2021	000522	김*남	570505-*** ****	경상북도봉화군재산면두들 마길 23	2021.11.17. 13:40	중구 신흥동 서해대로 이동2반	축하중1.65톤 초과(축하중11.6 5톤)	강원06 모6363	500,000	반송(이사 감)	
2	2021	000524	이*성	780524-***	전라남도광양시 광장로 84 (중동, 성호3차아파트) 304동 202호	2021.11.17. 09:43	중구 항동 인중로 항동검문소	폭0.8미터 초과(총폭3.38미 터)	전남98 사2570	1,000,000	반송(폐문 부재)	
3	2021	000535	이*상	620814-***	경기도부천시 부흥로188번길 29 (중동)	2021.11.25. 08:45	중구 항동 인중로 항동과적검문소	길이1.60미터 초과(총길이18.3 0미터)	경기99 사7663	300,000	반송(폐문 부재)	
4	2021	000549	장*욱	770915-***	대구광역시북구 관음로 18 (태전동, 태전대백맨션) 101동 902호	2021.12.13. 14:55	남동구 논현고잔동 앵고개로 이동1반	폭0.29미터 초과(총폭2.79미 터)	대구98 바3082	300,000	반송(폐문 부재)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15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된 과적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 및 최고)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2.1.21.~2022.2.4.(15일간)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6. 납부안내를 참조하시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납부안내

가. 납부기한 : 2022년 2월 11일까지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내용

ㅇ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

연번	부과번호	대상자	주민등록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 차량	체납본세	반송사유	비고
1	000308	강*원	전라남도목포시 청호로219번길 51 , 706동 1402호 (죽교동, 신안실크밸리7차아파트)	2021.6.11.0 9:24	서구 가좌동 중봉대로 이동2반	길이 1.30미터 초과(총길이 18미터)	전남98 바5732	300,000	반송(폐문부재)	
2	000327	함*수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효동2길 21-8 , 1동 302호 (효자동1가, 서부거성아파트)	2021.6.23.1 3:50	서구 경서동 중봉대로 이동3반	폭 0.26미터 초과(총폭 2.76미터)	인천99 아4292	300,000	반송(폐문부재)	
3	000434	이*중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부용로 3 , 304호 (고려연립)	2021.9.3. 04:47	서구 원창동 북항한진로 이동1반	축하중3.00톤 초과(축하중13.00톤)	인천98 자5124	1,200,000	반송(폐문부재)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7호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2021. 12. 30. 제정 시행됨에 따라「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정의)와 중복되는 "인구정 책"제2호 내용을 삭제함.(안 제2조)
- 나.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인구정책 종합계획), 제7조(인구정책의 시행), 제9조(인구정책 자문회의), 제10조(기능)이 시행됨에 따라 중복 조항을 삭제함.(안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영유아정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 신관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장순희(32-440-2952, fax 032-440-8725, 전자메일 jshpjh@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 신관 6층 영유아정책과

(2) 연락처: 전화) 032-440-2952, FAX) 032-440-8725,

전자메일 jshpjh@korea.kr

라.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개정안	찬・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출산대책"이란 임신·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에 따른 중장기 기본계획과 법 제21조"를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했

혉

- 1. "저출산대책"이란 임신ㆍ출 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 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 · 시행하는 시책을 말한 다.
- 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 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 변 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 화에 대응하여 수립ㆍ시행하 는 정책을 말한다.

제5조(중장기 기본계획) ① 시장 | <삭 제> 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 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0 <u>조에 따른 저출산</u>·고령사회 기 본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인 천광역시 저출산 · 고령사회 기 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저출산대책 기본계획의 기본

는 "저출산대책"이란 임신·출 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 <u>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u>수립 ·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정

아

개

목표와 추진방향

- 2.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법
- 4.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대책 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 제6조(역 은 제5조에 따른 중장기 기본계 획과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 다.
 -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 하여 군수・구청장,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 단체에 관련 계 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을 협조 • 요청할 수 있다.
 - ③ ④ (생 략)
- 제7조(의회 보고) 인천시는 중장 기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의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저출산대책위원회) ① 시의 | <삭 제> 저출산대책 등의 중요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저출 산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제6조(연도	별 시행계	1획) -		
	「인점	헌광역시	인구	정책	7]
본 2	조례_	제6조 '	및 「저	출신	<u></u>
<u>고</u> 령	사회	기본법」	(이하	"법	"○]
라	한다)	제21조-			

- $(\widehat{2})$ ------- 밖에 -----
- ③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은 시장으로 하고, 1명은 위촉직위원 중 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 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시의 출산인구정책 업무 담당국장, 일자리 업무 담당국장, 주택 업 무 담당국장, 교육 업무 담당 부 서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인천광역시의원 1명
- 2. 관련학과 교수 및 전문가
- 3. 관련분야 시민사회단체 활동 <u>가</u>
- 4. 기타 저출산대책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삭 제>

- 1. 제6조의 저출산대책 시행계 획에 관한 사항
- 2. 출산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 3. 시 인구 정책에 관한 사항
- 4. 저출산 대응에 관한 정책
- 5. 그 밖에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 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 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저출산대책 업 무 담당과장이 된다.
-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 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 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4. 그 밖에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④ 삭제 <2008. 2. 29.>
-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 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 • 교육 • 주택 • 교통 • 문화 • 복지 관련

지원 정책

-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3. 그 밖에 인구감소 · 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 제5조(인구정책 종합계획)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인구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 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4. 성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 5. 부서간 효율적 업무 협력 및 민관협업 체계 구성 · 운영 방안
 - 6. 지역별 인구구조에 따른 균형 발전 방안
 - 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 교육청, 관할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인구정책에 관한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의 시행) ① 시장은 시의 인구 규모와 구조를 개선하기

-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 1. 일자리 · 교육 · 주택 · 교통 · 문화 · 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
-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 3. 청년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
- 4.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정책
- 5. 지역별 인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원도심, 섬지역 등)
- 6.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 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 ② 시장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인구정책 자문회의)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자문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조정한다.
 -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 3. 결혼·임신·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 4.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 5. 인구감소 방지 및 유출 극복에 관한 사항
 - 6.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7. 인구정책과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 8.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 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시의 실·국
 - 본부장 및 외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안은 「인구정책 기본조례」 재정 시행에 따라 중복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1호에 해당되어 미 첨부함.

4. 작성자

○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장 김홍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2-16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월 24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권고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 절차 및 소송비용 회수 예외 규정'과 소송비용 미회수 사안 등의 심의를 위한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현재 교육청 소송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교육 청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정비하여 반영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 무 운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리교육청 및 소속기관 관련 소송사건은 노사협력과장이 총괄하도록 하고,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소송소관부서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소송 제기가 필요한 경우 노사협력과에 제소를 요구하도록 하고 제소 요구 및 제소 결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제소 결정 또는 피소 시,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소송담당자를 선임 · 지정하도록 하고 선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 록 함(안 제5조~제6조)
- 라.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등에게 교육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 및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하는 경우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
- 바. 승소 및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 사. 패소사건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강제집행에 대한 조치, 임의변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3조)
- 아.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자.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차. 국가소송 수행 시 국가소송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일반적 절차를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제17조)

3. 의견제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인천광역시교육감(노사협력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 지(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4) 보내실 곳: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 노사협력과
 - 우편번호 및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전화 및 팩스 : 전화)032-420-8223, 팩스)032-420-8338
 - E-mail: kwonmi882@ice.go.kr
- 4.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 1]
- 5. 제정조례안: [붙임 2]

【붙임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서식)

דו סו סו	성 명		단체명	
민원인 인 적	주 소			
사 항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행정절차법」제44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인)

인천광역시교육감(노사협력과장) 귀중

【붙임 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송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소송수행자"라 함은 행정소송사건(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 2.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민사소송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3. "소송담당자"라 함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소송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 4. "소송수행자 등"이라 함은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담당자로 지정·선임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소송 총괄 및 소송소관부서의 지정 등) ①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 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 가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으로 하는 소송사건은 노사협력과장이 총괄하

- 고, 해당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이하 "소송소관부서"라 한다)이 담당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소 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송소관부서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소송 제기 등)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을 제기(이하 "제소"라 한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사협력과장에게 제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소 요구를 받은 노사협력과장은 당사자 적격 여부 및 소의 이익 등을 검토하여 제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피소된 사건 중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제소의 예에 따라처리한다.
- ③ 제소 요구 및 제소 여부 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의 선임·지정 등) 제4조에 따라 제소를 결정하거나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피소되어 응소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의 선임·지정,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소송담당자의 지정 등) 교육감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소송사건마다 소송소관부서의 직원 중에서 소송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소송담당자의 지정 및 소송담당자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소송비용 등) ① 제5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 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판결 결과가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본안사건의 각각의 소송수행자 등(법무담당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상소)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노사협 력과장과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노사협력과장: 판결금 및 소송비용의 회수
 - 2. 소송소관부서의 장
 - 가. 판결내용의 집행
 - 나.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 다. 소송비용의 회수(행정소송에 한정한다)
 - 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

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 1. 상대방이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당사자를 잘못 지정한 경우
-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제출 경우로 한정한다)
- 3. 소송비용 회수에 드는 비용보다 회수하여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승 인을 받은 경우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다목에 따른 소송비용의 회수 절차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소관 부서의 장은 노사협력과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 2. 처분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 4.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 5. 패소사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의 건의
 - 6. 패소사유가 원인행위제공자의 고의·중과실 등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

경우 징계의결 요구 또는 구상권 행사

- 7. 그 밖에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구상권 행사)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고의·중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 ②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인행위자 및 재정보 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필요한 경우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사전 에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 행위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 ③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있다.
- 제12조(강제집행에 대한 조치) 패소사건으로 법원 집행관이 인천광역시교육 비특별회계 소관 보유물품 등을 강제집행 한 경우 그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의변제 등) 교육감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변제공탁 또는 임의변제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결정 및 임의변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7조제2항에 따른 소송대리인 특별착수금 및 특별사례금 결정에 관한사항
 - 2.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미회수에 관한 사항
 -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 포기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교육감이 소송사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당연직 위원: 미래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감사관, 노사협력과장
 - 2. 외부위원: 위원회 개최 시 미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3명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 다.
- 제1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 교육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 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상 손해에 대한 구상권 면제
 - 2. 적극행정으로 인한 고소·고발 또는 민사소송 등에 대해 공무원의 요청

- 시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변호인 · 소송대리인 추천
-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 나. 정부법무공단
- 다.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제16조(국가소송의 수행) 소속직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절차·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7조(소송 등에 관한 일반적 절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일반적 절차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수행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담당자로 지정·선임된 소송수행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되거나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소송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소송수행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라 수행한 소송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28조(조례) ○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86조(채권의 보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소송수행자의 지정등) ○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준수사항)
	□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
	□ 민사소송법

□ 지방자치법

○ 제87조(소	송대리인의 자격)
○ 제88조(소	: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 제98조(소	송비용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 →○ 제15조(단	구칙 :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 │	는 기계 전 기계
○ 제2조(배 ²	
□ 지방공무	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제17조(적	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운영규정 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특	컵 률
제18조(교육감) ①시·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
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현	·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여
대하여 해당 시·두를 대표하	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 · 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 · 규칙의 제정 · 개정 · 폐지 및 그 운영 · 관리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 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

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지방재정법

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상급 행정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소송수행자의 지정등)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때에는 소속검사(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관하 지청의 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당해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지방검찰청의경우에는 관하 지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포함한다)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검찰총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급검찰청 소속검사 또는 하급검찰 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③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 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해임서를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준수사항)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지정서와 위

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 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 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
- 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
- ②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 외한다) 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 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①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7.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도교육 감"으로 본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2-17호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4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 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주민의 교육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

서 검토. 의견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9조)

3. 의견제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인천광역시교육감(노사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4) 보내실 곳: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 노사협력과
 - 우편번호 및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전화 및 팩스 : 전화)032-420-8223, 팩스)032-420-8338
 - E-mail: kwonmi882@ice.go.kr
- 4.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 1]
- 5. 제정조례안: [붙임 2]

【붙임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서식)

nj oj oj	성 명		단체명	
민원인 - 인 적	주 소			
사 항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	그 이유	찬반 여부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행정절차법」제44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인)

인천광역시교육감(노사협력과장) 귀중

【붙임 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규칙"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교육 규칙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관한 교육규칙을 말한 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 및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

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서 검토 및 처리)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를 해당 교육규칙의 소관 부서 또는 업무 담당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③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1.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 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교육감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03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22. 1. 24.(월요일)
■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호서식]
교	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성명	[] 대표자
의견제출인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 시
	주소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을 선정하여 표시,	전화번호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	2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	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교육감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

	성명		
의견제출인	제출일자		
제출의견			
스키티티 미 카드티	부서명	74 E 01 T1	
소관부서 및 검토자	담당사성명 담당자연락처	검토일자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내용	수용여부/사유 등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교육감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 「지방자치법」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2-18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4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의 근거 조항 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제1조,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3. 의견제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인천광역시교육감(노사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4) 보내실 곳: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 노사협력과
 - 우편번호 및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전화 및 팩스 : 전화)032-420-8223, 팩스)032-420-8338
 - E-mail: kwonmi882@ice.go.kr
- 4.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 1]
- 5. 개정조례안: [붙임 2]

[붙임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서식)

H 0 0	성 명		단체명	
민원인 인 적	주 소			
사 항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ما جا باا ه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행정절차법」제44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인)

인천광역시교육감(노사협력과장) 귀중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의3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제15조"를 "「지방자치법」제19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비용추계서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를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u>조례는「지방자치</u>	제1조(목적) <u>조례는 「지방자</u>
법」제66조의3과「지방교육자	치법」 제78조과 「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u>치에 관한 법률」 제3조</u>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	
안에 대한 자료 작성 등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①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u>별지</u>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1호서식
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	
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	② 「지방자치법」제19조
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	3
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u>별지 제2호 서식</u> 에 따른 비용추	<u>별지 제2호서식</u>
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	

야 하다.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 부서 등) ①·② (생 략)

- ③ 교육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교육·학 예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 서는 소관 부서에서 시의회에 부의할 때 붙여야 한다.

·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 부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u><</u> 삭 제>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군 구

강화군공고 제2022-81호

공인 폐기 공고

강화군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폐기 공인을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8.

강 화 군 수

□ 폐기 공인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 격	폐기사유	폐기일	비고
週7	인천광역시소관도시개발 특별회계강화군지출원인		한글 전서체 2.0cm×2.0cm	조례폐지	2022.1.18.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강화군지출원	2000円の回りのでは、1000円の回りのでは、1000円の回りのには、1000円の回りのには、1000円の回りのには、1000円の回りのには、1000円の回りのには、1000円の回りの回りの回りの回りの回りの回りの回りの回りの回りの回りの回りの回りの回りの	한글 전서체 2.0cm×2.0cm	조례폐지	2022.1.18.	

기 타

인천남동소방서공고 제2022-1호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25조에 따른 작동기능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인천남동소방서장

1. 공고문명 :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자 : 청실프라자(동암남로26번길 39) 소유자 강*미 등 138명

3. 처분내용 :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4. 공고내용

예정된 처분 의 제목	소방시설성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당사자	성 명	명 청실프라자 관계인 (강*미 등 138명)					
6/1/1	주 소	인천광역/	시 남동구 동임	남로26번길	₫ 39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처분내용	소방시설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화재안전기준 부적합에 따른 조치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기관명 인천 부서명 예방안전과 담당자 소						소방교 이풍성	
의견제출	제출처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14		전화 번호	032)870-5267	
의선세술		전자 우편	pshj222@ko	rea.kr		팩스 번호	032)870-5218
	제출 기한	2022년 2월	2월 18일까지				

-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1부.
 - 2. 의견제출서 1부.
 - 3.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지적내역서 1부. 끝.

[붙임 1]

연 번	소 유 자	주 소	비고
1	강*미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	반송
2	고*옥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곶로40번길 ***	반송
3	고*숙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4	구*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반송
5	김*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반송
6	김*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	반송
7	김*묵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422번길 ***	반송
8	김*옥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반송
9	김*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	반송
10	김*옥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	반송
11	 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422번길 ***	반송
12	 김*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	반송
13	 김*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19번길 ***	반송
14	 김*훈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864번길 ***	반송
15	 김*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	반송
16	 김*수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	반송
17	 김*철	인천광역시 남구 서정로 ***	반송
18	 김*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97번길 ***	반송
19	 김*숙	전라북도 군산시 백릉로 ***	반송
20	 김*훈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21	 김*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	반송
22	 김*석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	반송
23	나*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암남로34번길 ***	반송
24	 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반송
25	문*익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반송
26	민*도	서울특별시 용산 이촌동 ***	반송
27	 민*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	반송
28	 민*홍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반송
29	 박*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30	 박*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	반송
31	<u></u> 박*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32	<u></u> 박*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33	<u></u> 박*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	반송
34	 박*진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아남로26번길 ***	반송
35	 박*대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	반송
36	 박*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99번길 ***	반송
37	 배*선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	반송

38 백·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암남로34번길 *** 반송 19	연 번	소 유 자	주소	비고
19			·	·
## 40 선*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69번길 *** 반송 ## 41 송*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 반송 ## 42 송*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박돌말로19번길 *** 반송 ## 43 신*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반송 ## 44 신*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반송 ## 45 신*애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 46 신*옥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반송 ## 47 양*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반송 ## 48 오*수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 반송 ## 8 오*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 9 오*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 50 우*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 51 원*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 52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동 *** 반송 ## 53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 54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 55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 56 원*종합건설원*두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 57 유*종 경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 58 유*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 59 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 60 윤*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 61 윤*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 반송 ## 62 윤*매 경기도 부천시 원제구 *** 반송 ## 63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작동 *** 반송 ## 64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작동 *** 반송 ## 65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작동 *** 반송 ## 66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작동 *** 반송 ## 67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작동 *** 반송 ## 68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작동 *** 반송 ## 69 이*한 인천광역시 무구구 장착동 *** 반송 ## 69 이*한 인천광역시 무구구 장착동 *** 반송 ## 69 이*한 인천광역시 무구구 장착동 *** 반송 ## 60 이*한 인천광역시 무구구 장착동 *** 반송				
### 41				
### 42 송*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1번길 *** 반송 ### 43 신*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반송 ### 44 신*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 45 신*애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 46 신*육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 47 양*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반송 ### 48 오*수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 반송 ### 49 오*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 50 우*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반송 ### 51 원*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반송 ### 52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반송 ### 52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동 *** 반송 ### 53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 54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 55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 56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 56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 57 유*종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 반송 ### 58 유*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 59 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 60 윤*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 61 윤*주 경기도 부천시 오전구 *** 반송 ### 62 윤*매 경기도 부천시 오전구 *** 반송 ### 64 이*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목동 *** 반송 ### 65 이*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목동 *** 반송 ### 66 이*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 66 이*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 67 이*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 68 이*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 69 이*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 69 이*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착동 *** 반송 ### 69 이*활 인천광역시 영구구 연수동 *** 반송 ### 69 이*활 인천광역시 영구구 영수동 *** 반송 ### 69 이*활 인천광역시 영구구 영수동 *** 반송 ### 71 이*업 인천광역시 당구구 연수동 *** 반송				
43 신*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반송 44 신*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45 신*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46 신*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반송 47 양*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반송 48 오*수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 반송 49 오*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0 우*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1 원*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2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일동 *** 반송 53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동 *** 반송 54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5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6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7 유*종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 반송 58 유*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9 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60 윤*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61 윤*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 반송 62 윤*매 경기도 병천시 오정구 *** 반송 63 이*영 인천광역시 남주구 산곡동 *** 반송 64 이*영 인천광역시 엄수구 청작동 *** 반송 65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작동 *** 반송 66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작동 *** 반송 67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작동 *** 반송 68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작동 *** 반송 69 이*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작동 *** 반송 69 이*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작동 *** 반송 61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작동 *** 반송 6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작동 *** 반송 63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작동 *** 반송 64 이*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작동 *** 반송 65 이*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작동 *** 반송 66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작동 *** 반송 67 이*순 인천광역시 명수구 청작동 *** 반송 68 이*순 인천광역시 명수구 청작동 *** 반송 69 이*한 인천광역시 명수구 청작동 *** 반송 69 이*한 인천광역시 명수구 청작동 *** 반송 69 이*한 인천광역시 등구구 양동 *** 반송 60 인천광역시 등구구 양동 *** 반송 61 아*집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안남물26번길 *** 반송 6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44 신*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45 신*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반송 46 신*옥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반송 47 양*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반송 48 오*수 경기도 파주시 급청2길 *** 반송 49 오*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0 우*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1 원*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2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3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동 *** 반송 54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5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6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7 유*종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 반송 58 유*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9 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60 윤·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반송 61 윤·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반송 62 윤*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반송 63 이*영 인천광역시 남평구 간석동 *** 반송 64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5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6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7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8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9 이*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학동 *** 반송 69 이*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학동 *** 반송 69 이*한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 반송 69 이*한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 반송 69 이*한 인천광역시 중구 강동7가 *** 반송 69 이*한 인천광역시 등구 수등등 *** 반송 60 한국 인천광역시 등구 수등등 *** 반송 61 양후 인천광역시 등구 수등등 *** 반송				
45 신*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반송 46 신*옥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 반송 47 양*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정천동 *** 반송 48 오*수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 반송 49 오*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0 우*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1 원*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2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3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동 *** 반송 54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동 *** 반송 55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6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7 유*종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 반송 58 유*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9 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60 윤*민 경기도 부천시 오성면 *** 반송 61 윤*주 경기도 부천시 인천공 *** 반송 62 윤*매 경기도 부천시 인천구 *** 반송 63 이*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 반송 64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학동 *** 반송 65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학동 *** 반송 66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학동 *** 반송 66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7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8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9 이*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9 이*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3 이*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4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5 이*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6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7 이*한 인천광역시 영수구 연수동 *** 반송 68 이*순 인천광역시 등구 충등 *** 반송 69 이*한 인천광역시 등구 충등 *** 반송 70 이*회 인천광역시 등구 충등 *** 반송 71 이*설 인천광역시 등구 충등 *** 반송 72 이*회 인천광역시 등구 충등 *** 반송 73 이*훈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안남로26번길 *** 반송				
46 신·옥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 반송 47 양·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정천동 **** 반송 48 오·수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 반송 49 오·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0 우·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1 원·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2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3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동 **** 반송 54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동 **** 반송 55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6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7 유·종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 반송 58 유·영 인천광역시 남구 수의동 **** 반송 59 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60 윤*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61 윤·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 반송 62 윤·배 경기도 부천시 외미구 **** 반송 63 이*영 인천광역시 남평구 산곡동 **** 반송 64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학동 **** 반송 65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수동 **** 반송 66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수동 **** 반송 67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학동 **** 반송 68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학동 **** 반송 69 이*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수동 **** 반송 69 이*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수동 **** 반송 70 이*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수동 **** 반송 71 이*선 인천광역시 경구 장동 **** 반송 72 이*회 인천광역시 등구 장동 **** 반송 73 이*훈 인천광역시 등구 구동암남로26번길 **** 반송 74 이*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당남로26번길 **** 반송				
47 양*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반송 48 오*수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 반송 49 오*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0 우*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1 원*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2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3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4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5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6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7 유*종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 반송 58 유*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9 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60 윤*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61 윤*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 반송 62 윤*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 반송 63 이*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상천동 **** 반송 64 이*영 인천광역시 연				
## 2 ***		-		
49 오·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0 우·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절동 *** 반송 51 원·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절동 *** 반송 52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동 *** 반송 53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두구 주안동 *** 반송 54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5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6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7 유·종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 반송 58 유·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9 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60 윤·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61 윤·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62 윤·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반송 63 이·영 인천광역시 남평구 산곡동 *** 반송 64 이·영 인천광역시 연구구 청학동 *** 반송 65 이·영 인천광역시 연구구 청학동 *** 반송 66 이·순 인천광역시 연구구 청학동 *** 반송 67 이·순 인천광역시 연구구 연수동 *** 반송 68 이·수 인천광역시 연구구 연수동 *** 반송 69 이·한 인천광역시 연구구 연수동 *** 반송 70 이·희 인천광역시 경구 항동7가 *** 반송 71 이·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72 이·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73 이·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74 이·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반송		_ ,		
50 우*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반송 51 원*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2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3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4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5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6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7 유*종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 반송 58 유*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9 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60 윤*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61 윤*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반송 62 윤*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반송 63 이*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 반송 64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5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6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7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8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9 이*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반송 70 이*회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 반송 71 이*섭 인천광역시 등구 송현동 *** 반송 72 이*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73 이*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74 이*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1 원*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2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동 **** 반송 53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4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5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6 원*종합건설원*두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6 원*종합건설원*두 인천광역시 남구 수의동 **** 반송 57 유*종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 반송 58 유*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9 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60 윤*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61 윤*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반송 62 윤*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반송 63 이*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 반송 64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5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반송 66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학동 **** 반송 67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학동 **** 반송 68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현동 **** 반송 69 이*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반송 70 이*회 인천광역시 등구 송현동 **** 반송 71 이*섭 인천광역시 등구 송현동 **** 반송 72 이*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73 이*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반송 74 이*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반송		-		
52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국 주안동 **** 반송 53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4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5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6 원*종합건설원*두 인천광역시 남구 숙의동 **** 반송 57 유*종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 반송 58 유*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9 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60 윤*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61 윤*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 반송 62 윤*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반송 63 이*영 인천광역시 무정구 산곡동 **** 반송 64 이*영 인천광역시 연구구 청학동 **** 반송 65 이*영 인천광역시 연구구 연수동 **** 반송 66 이*순 인천광역시 연구구 정학동 **** 반송 67 이*순 인천광역시 연구구 영주동 **** 반송 69 이*한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 반송 70 이*회 인천광역시				
53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4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5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6 원*종합건설원*두 인천광역시 남구 수의동 **** 반송 57 유*종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 반송 58 유*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9 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60 윤*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61 윤*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 반송 62 윤*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반송 63 이*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 반송 64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5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6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7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8 이*순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 반송 70 이*회 인천광역시 등구 송현동 **** 반송 71 이*섭 인천광역시 등	52	-		
54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5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6 원*종합건설원*두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 반송 57 유*종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 반송 58 유*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9 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60 윤*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61 윤*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 반송 62 윤*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반송 63 이*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 반송 64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5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6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7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8 이*순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 반송 70 이*회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 반송 71 이*설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26번길 *** 반송 72 이*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td>53</td> <td></td> <td></td> <td></td>	53			
56 원*종합건설원*두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 반송 57 유*종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 반송 58 유*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9 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60 윤*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61 윤*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 반송 62 윤*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반송 63 이*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 반송 64 이*영 인천광역시 연구구 청학동 **** 반송 65 이*영 인천광역시 연구구 영수동 **** 반송 66 이*순 인천광역시 연구구 청학동 **** 반송 67 이*순 인천광역시 연구구 청학동 **** 반송 68 이*순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 반송 69 이*한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 반송 70 이*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26번길 **** 반송 71 이*섭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26번길 **** 반송 72 이*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74 이*자 인천광역시 부평	54			
57 유*종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 반송 58 유*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9 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60 윤*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61 윤*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 반송 62 윤*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반송 63 이*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 반송 64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5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반송 66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7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반송 68 이*순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 반송 69 이*한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 반송 70 이*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26번길 *** 반송 71 이*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72 이*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73 이*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74 이*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55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8 유*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9 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60 윤*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61 윤*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 반송 62 윤*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반송 63 이*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 반송 64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5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반송 66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7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8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반송 69 이*환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 반송 70 이*회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 반송 71 이*섭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26번길 *** 반송 72 이*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73 이*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반송 74 이*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반송	56	원*종합건설원*두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	반송
59 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60 윤*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61 윤*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 반송 62 윤*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반송 63 이*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 반송 64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5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반송 66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7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8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반송 69 이*환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 반송 70 이*회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 반송 71 이*섭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26번길 *** 반송 72 이*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73 이*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반송 74 이*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반송	57	유*종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	반송
60 윤*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61 윤*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 반송 62 윤*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반송 63 이*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 반송 64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5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학동 *** 반송 66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7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8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9 이*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반송 70 이*희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 반송 71 이*섭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26번길 *** 반송 72 이*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73 이*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반송 74 이*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반송	58	유*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61 윤*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 반송 62 윤*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반송 63 이*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 반송 64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5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반송 66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7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8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반송 69 이*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반송 70 이 이희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 반송 71 이*섭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26번길 *** 반송 72 이*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73 이*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반송 74 이*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59	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62 윤*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반송 63 이*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 반송 64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5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반송 66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7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8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반송 69 이*환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반송 70 이*희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 반송 71 이*섭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26번길 *** 반송 72 이*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73 이*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반송 74 이*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60	윤*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63 이*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 반송 64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5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반송 66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7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8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반송 69 이*환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 반송 70 이*회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 반송 71 이*섭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26번길 **** 반송 72 이*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73 이*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반송 74 이*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반송	61	윤*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	반송
64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5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반송 66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7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8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9 이*한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 반송 70 이*희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 반송 71 이*섭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26번길 *** 반송 72 이*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73 이*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반송 74 이*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62	윤*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반송
65이*영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반송66이*순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반송67이*순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반송68이*순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반송69이*한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반송70이*희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반송71이*섭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26번길 ***반송72이*희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반송73이*혼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반송74이*자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반송	63	이*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	반송
66이*순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반송67이*순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반송68이*순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반송69이*한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반송70이*희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반송71이*섭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26번길 ****반송72이*희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반송73이*훈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반송74이*자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반송	64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7이*순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반송68이*순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반송69이*환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반송70이*희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반송71이*섭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26번길 ***반송72이*희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반송73이*훈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반송74이*자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반송	65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반송
68이*순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반송69이*한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반송70이*희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반송71이*섭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26번길 ***반송72이*희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반송73이*훈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반송74이*자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반송	66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9이*환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반송70이*희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반송71이*섭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26번길 ***반송72이*희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반송73이*훈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반송74이*자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반송	67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70 이*희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 반송 71 이*섭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26번길 *** 반송 72 이*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73 이*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반송 74 이*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반송	68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반송
71 이*섭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26번길 *** 반송 72 이*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73 이*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반송 74 이*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반송	69	이*환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	반송
72 이*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73 이*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반송 74 이*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반송	70	이*희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	반송
73 이*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반송 74 이*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반송	71	·		
74 이*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반송		1 1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74	이* 소 이*숙	인선광역시 무평구 정선동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반송

연 번	소유자	주 소	비고
76	이*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268번길 ***	반송
77	이*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반송
78	이*구	충남 금산군 금성면 ***	반송
79	이*필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	반송
80	이*엽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382번길 ***	반송
81	이*분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	반송
82	이*규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	반송
83 84	<u>이</u> *숙 임*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	반송 반송
85	<u> </u>		
	임*규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	반송
86	임*철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반송
87	장*승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로 ***	반송
88	장*성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	반송
89	장*영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90	장*조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	반송
91	전*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	반송
92	전*수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	반송
93	정*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94	정*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166번길 ***	반송
95	정*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반송
96	정*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반송
97	정*순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382번길 ***	반송
98	정*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	반송
99	정*철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	반송
100	정*종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반송
101	정*광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반송
102	정*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	반송
103	정*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	반송
104	정*용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105	정*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106	조*덕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	반송
107	조*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	반송
108	조*래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201번길 ***	반송
109	조*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	반송
110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	반송
111	조*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112	조*환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	반송
113	조*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반송

연 번	소 유 자	주소	비고
114	청***건설민*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	반송
115	청***건설민*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116	최*근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117	최*혁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	반송
118	최*구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반송
119	최*준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	반송
120	최*철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	반송
121	최*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122	추*호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	반송
123	한*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	반송
124	한*환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	반송
125	한*령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반송
126	강*미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	반송
127	권*선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128	김*옥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	반송
129	김*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	반송
130	김*숙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131	김*훈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132	김*철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	반송
133	김*훈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134	김*곤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반송
135	민*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	반송
136	민*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	반송
137	박*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	반송
138	 박*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붙임 2] ■ 행정절차법 A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호서식] <개정 2014.7.28>
※ 이래의 유의사항	을 읽고 작성하시기 비랍 성명	의 견 제 출 서 _{니다.}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니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치	·법」 제27조제1	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남동소방서장 귀하

유의 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붙임 3]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적내역서	
점 검 대 상	청실프라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암남로 26번길39)	
관 계 인	강 〇 미 등 138명	
소 방 시 설	지 적 사 항	관 련 법 령
등의 종류		
소화설비	 ○ 다음장소 스프링클러헤드 반경불량으로 증설요함 3개소. - 1층 마트 출입구 앞 1개, 마트 내 사무실 1개 - 3층 우측 계단실 앞(330호 사무실 앞) 1개 ○ 다음장소 스프링클러헤드 함몰상태 3개 - 1층 마트 내 안쪽 소상고 앞 1개, 탈의실 앞 2개 ○ 3층 알람밸브 압력스위치 및 탬퍼스위치 선로 분리상태로 조치요함. ○ 지하 2층 프리액션밸브 2차측 밸브 잠금상태. ○ 3층 <□토폴리스(오피스텔)> 전용 스프링클러 엔진펌프 밧데리 불량 1개소. 	스프링클러설 의 화재안전기 (NFSC 103)
경보설비	○ 3층 <청프라자>소사무실 복도 내 감지기 적응성 불량 3개소.(열->연기) ○ 다음장소 발신기 누름스위치 불량 4개소. - 지하 2층 주차장 경사로 앞 발신기 1개, 좌측 계단실 내 발신기 1개 - 1층 마트 내 우측 발신기 1개 - 3층 좌측 소화전 1개 ○ 비상방송설비 연동불량 상태. - 상가(지하 2층 ~ 지상 3층) 내 비상방송 출력시 연동불량상태. - 수신기에서 비상방송설비 엠프로 신호는 넘어가는 상태.	자동화재탐지 비 및 시각경보장치 화재안전기준 (NFSC 203)
피난구조설비	○ 3층 <청프라자>소사무실 복도 내 유도등 선로 간선상태 불량으로 조치요함. 전선관 사용안함. 폴대 및 선로만 포설된 상태. 3층 <청프라자>소사무실 복도 내 유도등 적응성불량 3개소.(피난구 → 통로) 다음장소 피난구유도등 미설치 3개소. - 1층 마트 출입구 1개, 우측 계단실 출입구 1개 다음장소 피난구유도등 점등불량 4개소. - 지하 2층 발전기실 출입구 2개, 주차장 내 경사로 앞 1개, 기계실 출입구 1개 다음장소 피난구유도등 점등불량 4개소. - 지하 2층 발전기실 출입구 2개, 주차장 내 경사로 앞 1개, 기계실 출입구 1개 다음장소 피난구유도등 외관상태 불량으로 조치요함. - 1층 좌측 계단실 출입구 1개(외면표지 탈락) - 3층 좌측 계단실 출입구 1개(외면표지 변형) 1층 마트 내 거실통로유도등 미설치 1개소.(양면,방향) 다음장소 통로유도등 점등불량 6개소. - 좌측계단 ph층 → 3층 1개(좌방향) 3층 →> 2층 1개(주방향) 1층 →> b1층 1개(주방향) 1층 → b1층 1개(좌방향) - 우측계단 b2층 → b1층 1개(좌방향) - 우측계단 b2층 → b1층 1개(좌방향) - 다음장소 통로유도등 철거상태로 조치요함 3개소. - 지하 2층 → 경사로 사이 첫번째 1개(전원불량) - 지하 2층 → 경사로 사이 첫번째 1개(전원불량) - 다음장소 비상조명등 점등불량 4개소. - 3층 <디토폴리스(오피스텔)> 내 알람밸브실 앞 1개, 우측 출입구 1개, 314호 - 315호 사이 1개, 303호 - 304호 사이 1개 □ 다음장소 비상조명등 예비전원 불량 2개소.(6v-900mAh) - 3층 <디토폴리스(오피스텔)> 내 317호 우측 1개, 309호 옆 1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NFSC303)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4)
기타설비	○ 다음장소 방화문 도어체크 미설치 2개소. - 좌측 계단실 쪽 3층 출입구 2개(방화문 양쪽), ph층 방화문 1개 ○ 다음장소 방화문 도어체크 탈락상태로 조치요함 3개소 - 우측 계단실 쪽 지하 2층 출입구 1개, 3층 출입구 2개	소방시설법 제10조